

수원지방법원 2024. 6. 11 선고 2024가단505111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한국전력공사

소송대리인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30.

판 결 선 고 2024. 6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6,993,510원 및 이에 대한 2024. 1. 6.부터 2024. 3. 1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1. 10. 21. 용인시 처인구 C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D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로부터 전기사용신청을 받고 위 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.

1) 납기일 2023. 10. 5. : 1,462,270원(연체료)

2) 납기일 2023. 9. 5. : 16,355,580원(사용기간 : 2023. 8. 17.부터 2023. 9. 4.까지)3) 납기일 2023. 8. 5. : 28,451,750원(사용기간 : 2023. 7. 17.부터 2023. 8. 16.까지)4) 납기일 2023. 7. 5. : 10,723,910원(사용기간 : 2023. 6. 17.부터 2023. 7. 16.까지)

나. 한편 피고는 2023. 2.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2023. 2. 17.부터 2025. 2. 16.까지의 전기요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부 전기요금 등 합계 56,993,51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료 납부기한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24. 1. 6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4. 3. 1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시 상환하기에는 회사가 어렵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권리남용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, 피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문기선